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5. 12 선고 2022가단3194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피 고 1. 주식회사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5. 12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12. 29.부터 2012. 6. 1.까지는 연 6%, 2012. 6. 2.부터 2015. 9. 30.까지는 연 20%, 2015. 10. 1.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,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이유형

별지